##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운반구와 같이 떨어져 부상

재해형태	떨어짐	재해정도	부상 2명
재해개요	소속 재해자 2명이 출하장 2층에서 일반용작업용 리프트 내부로 제품박스를 옮기던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운반구와 같이 1층(운행거리 4.4m)으로 떨어져 재해자 2명이 3개월 이상 휴업(요양)한 재해임		
재 해 상 황 도			
	3층 2층 1층(바닥)	4.4	15.1m 7.7 m
안전대책	<ul> <li>○ 불량한 와이어로프 사용금지</li> <li>- 리프트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심하게 손상·변형 또는 부식되어 있거나 한꼬임의 소선의 수가 10%이상,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%를 초과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됨</li> <li>○ 과부하방지장치 등 설치</li> <li>-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부하방지장치 등을 설치 후 사용하여야 함</li> <li>○ 운전 시작 전 점검 실시</li> <li>-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에 방호장치·브레이크 및 클러치의기능,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등에 대해 점검토록하여야 함</li> </ul>		